|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의 협력과 기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측 합영자라 약칭함)이 평등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 합영자라 약칭함)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정부가 비준한 합의․계약․정관에 따른, 합영기업중 외국합영자의 투자, 분배받아야 할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국유화와 징발을 시행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징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3조 합영 각측이 체결한 합영합의․계약․정관은 국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이하 심사 비준기관이라 함)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합영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할 수 있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측 합영자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영 각측은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한다.  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 각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측은 현찰․실물․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투자한 기술 또는 설비는 중국에서 필요한 하이테크 또는 설비여야 한다. 고의로 낙오된 기술 또는 설비로 기만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토지사용권을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제반 투자에 대하여는 합영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두며 그 인원구성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계약․정관에서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합영 각측은 위임 및 소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 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할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임한다. 이사회는 공평 호혜 원칙에 따라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 즉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 방안, 수입 및 지출예산, 이윤분배, 근로임금계획, 조업중지, 그리고 총경리․부총경리․총기사․총회계사․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총경리(또는 정․부공장장)는 합영 각측이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 종업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묶고 노도활동을 벌리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 노조에 그가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이 취득한 총 이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비축기금,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이윤은 등록자본중 합영 각측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 조세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감면세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중국 경내의 재투자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국가외환관리기관으로부터 외환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기업과 관련한 외환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에서 직접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료․연료 등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 경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한 위탁기구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경외에 분지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측 합영자가 법률 및 합의․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받은 순이윤, 합영기간 만료 또는 중지시 분배받은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영기업 계약에서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합영기업 외국적 종업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부동한 업종 및 상황에 따라 부동하게 약정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영기간을 약정한 합영기업의 합영 각측이 합영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는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에 중대한 결손이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영 각측은 협상 동의를 거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계약을 종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측은 경제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합영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3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반포한다.  제16조 합영 각측지간에 쟁의가 발생하여 이사회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중재기구에서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 합영 각측은 합의에 따라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합영 각측이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7조 이 법은 반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1979年7月1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根据1990年4月4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1年3月15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6年9月3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四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为了扩大国际经济合作和技术交流，允许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合营者)，按照平等互利的原则，经中国政府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同中国的公司、企业或其它经济组织(以下简称中国合营者)共同举办合营企业。  第二条　中国政府依法保护外国合营者按照经中国政府批准的协议、合同、章程在合营企业的投资、应分得的利润和其它合法权益。  合营企业的一切活动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的规定。  国家对合营企业不实行国有化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合营企业可以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第三条　合营各方签订的合营协议、合同、章程，应报国家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以下称审查批准机关)审查批准。审查批准机关应在三个月内决定批准或不批准。合营企业经批准后，向国家工商行政管理主管部门登记，领取营业执照，开始营业。  第四条　合营企业的形式为有限责任公司。  在合营企业的注册资本中，外国合营者的投资比例一般不低于百分之二十五。  合营各方按注册资本比例分享利润和分担风险及亏损。  合营者的注册资本如果转让必须经合营各方同意。  第五条　合营企业各方可以现金、实物、工业产权等进行投资。  外国合营者作为投资的技术和设备，必须确实是适合我国需要的先进技术和设备。如果有意以落后的技术和设备进行欺骗，造成损失的，应赔偿损失。  中国合营者的投资可包括为合营企业经营期间提供的场地使用权。如果场地使用权未作为中国合营者投资的一部分，合营企业应向中国政府缴纳使用费。  上述各项投资应在合营企业的合同和章程中加以规定，其价格(场地除外)由合营各方评议商定。  第六条　合营企业设董事会，其人数组成由合营各方协商，在合同、章程中确定，并由合营各方委派和撤换。董事长和副董事长由合营各方协商确定或由董事会选举产生。中外合营者的一方担任董事长的，由他方担任副董事长。董事会根据平等互利的原则，决定合营企业的重大问题。  董事会的职权是按合营企业章程规定，讨论决定合营企业的一切重大问题：企业发展规划、生产经营活动方案、收支预算、利润分配、劳动工资计划、停业，以及总经理、副总经理、总工程师、总会计师、审计师的任命或聘请及其职权和待遇等。  正副总经理(或正副厂长)由合营各方分别担任。  合营企业职工的录用、辞退、报酬、福利、劳动保护、劳动保险等事项，应当依法通过订立合同加以规定。  第七条　合营企业的职工依法建立工会组织，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的合法权益。  合营企业应当为本企业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  第八条　合营企业获得的毛利润，按中华人民共和国税法规定缴纳合营企业所得税后，扣除合营企业章程规定的储备基金、职工奖励及福利基金、企业发展基金，净利润根据合营各方注册资本的比例进行分配。  合营企业依照国家有关税收的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可以享受减税、免税的优惠待遇。  外国合营者将分得的净利润用于在中国境内再投资时，可申请退还已缴纳的部分所得税。  第九条　合营企业应凭营业执照在国家外汇管理机关允许经营外汇业务的银行或其它金融机构开立外汇帐户。  合营企业的有关外汇事宜，应遵照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办理。  合营企业在其经营活动中，可直接向外国银行筹措资金。  合营企业的各项保险应向中国境内的保险公司投保。  第十条　合营企业在批准的经营范围内所需的原材料、燃料等物资，按照公平、合理的原则，可以在国内市场或者在国际市场购买。  鼓励合营企业向中国境外销售产品。出口产品可由合营企业直接或与其有关的委托机构向国外市场出售，也可通过中国的外贸机构出售。合营企业产品也可在中国市场销售。  合营企业需要时可在中国境外设立分支机构。  第十一条　外国合营者在履行法律和协议、合同规定的义务后分得的净利润，在合营企业期满或者中止时所分得的资金以及其它资金，可按合营企业合同规定的货币，按外汇管理条例汇往国外。  鼓励外国合营者将可汇出的外汇存入中国银行。  第十二条　合营企业的外籍职工的工资收入和其它正当收入，按中华人民共和国税法缴纳个人所得税后，可按外汇管理条例汇往国外。  第十三条　合营企业的合营期限，按不同行业、不同情况，作不同的约定。有的行业的合营企业，应当约定合营期限；有的行业的合营企业，可以约定合营期限，也可以不约定合营期限。约定合营期限的合营企业，合营各方同意延长合营期限的，应在距合营期满六个月前向审查批准机关提出申请。审查批准机关应自接到申请之日起一个月内决定批准或不批准。  第十四条　合营企业如发生严重亏损、一方不履行合同和章程规定的义务、不可抗力等，经合营各方协商同意，报请审查批准机关批准，并向国家工商行政管理主管部门登记，可终止合同。如果因违反合同而造成损失的，应由违反合同的一方承担经济责任。  第十五条　举办合营企业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对本法第三条、第十三条、第十四条规定的审批事项，适用备案管理。国家规定的准入特别管理措施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  第十六条　合营各方发生纠纷，董事会不能协商解决时，由中国仲裁机构进行调解或仲裁，也可由合营各方协议在其它仲裁机构仲裁。  合营各方没有在合同中订有仲裁条款的或者事后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  第十七条　本法自公布之日起生效。 |